



# 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규정개정 승인

1.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-12474(2015.12.21)호와 관련입니다.
2.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(안) 등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2조(감독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.
  - 가.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 : 2015년 제2회 (2015. 12. 18.)
  - 나. 세부내역

의안번호	의안 제목	내 용
2015-3	○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정 사유 : 행정자치부에서 『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』이 내려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</li> <li>○ 제정 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</li> <li>-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년도래 3년전 5%, 2년전 10%, 1년전 15% 감액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
2015-4	○ 정관 일부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“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 추가</li> <li>- 공단 사업범위에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</li> <li>- 창의경영팀을 이사장 직속 기구에서 상임이사 산하로 개편</li> <li>-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을 정관에 반영</li> </ul> </li> </ul>
2015-5	○ 취업규칙 일부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</li> </ul> </li> </ul>

의안번호	의안 제목	내 용								
2015-6	○ 직제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웰빙체육팀의 업무분장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추가								
2015-7	○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관련 사무를 웰빙체육팀의 전결사항에 포함하여 사무전결처리 사항을 추가 조정								
2015-8	○ 인사규정 일부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직원의 정년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, 세부적인 사항을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함								
2015-9	○ 보수규정 운영규정 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3급~9급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 전년도 총 인건비의 5.2% 범위 내에서 인상, 임원은 기본연봉이 3.8% 이내에서 인상 -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보수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적용								
2015-10	○ 연봉제규정 일부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적용될 규정을 명시하도록 연봉계약서 양식을 변경								
2015-11	○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개정(안)	○ 개정 내용 -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불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을 삭제 -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준용근거 마련								
2015-12	○ 2015년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 및 추인(안)	○ 추인사유 : 2015년 강북구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된 예산 반영								
		○ 2015년 예산안 총괄표 (단위:천원)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 도</th> <th>추경예산</th> <th>당초예산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5년</td> <td>15,203,673</td> <td>14,921,557</td> <td>282,11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 도	추경예산	당초예산	증 감	2015년	15,203,673	14,921,557	282,116
연 도	추경예산	당초예산	증 감							
2015년	15,203,673	14,921,557	282,116							
2015-13	○ 2016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	○ 세입·세출예산: 15,620,554천원 (전년대비 698,997천원 증가)								

붙임: 규정개정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세부내용 1부. 끝.

주무관 **백송희** 예산팀장 **박종식** 기획예산과장 **조상연** 기획재정국장 **이상형**

부구청장 <sup>12/28</sup>  
**하철승**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103270 ( ) 접수 ( )

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/ <http://www.gangbuk.go.kr>

전화 901-6152 / 전송 02-901-6150 / [qor thdgm1@gangbuk.go.kr](mailto:qor thdgm1@gangbuk.go.kr) / 부분공개